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61
----------	------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 이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도시지역 건축제한 사항 정비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비도시지역 안에서 인·허가 없이 가능한 토지분할제한면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 나. 비도시지역 안에서 허용·불허용 건축물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부터 제50조의2까지)
- 다.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 라. 성장관리계획 등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2. (21일간)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2023년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 원안가결(강화규제 4건)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
-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6) 비 용 추 계 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녹지지역”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2. 관리지역: 90제곱미터
3. 농림지역: 90제곱미터
4. 자연환경보전지역: 90제곱미터

제47조제9호 중 “동호가목 및 마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묘지관련시설”을 “묘지관련시설 중 다목”으로 한다.

제48조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20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
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제50조제9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장제1절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
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
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
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
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과 비슷한 것

제79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제2호 근거법규란 중 “제70조 및 조례”를 “제70조까지, 제75조의
2부터 제75조의4까지 및 조례”로 한다.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도시계획위원회 심

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u>녹지지역</u>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제한면적은 <u>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u></p> <p><신 설></p>	<p>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 ----- ---- <u>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u> ----- ----- --- <u>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녹지지역</u>: 200제곱미터 2. <u>관리지역</u>: 90제곱미터 3. <u>농림지역</u>: 90제곱미터 4. <u>자연환경보전지역</u>: 90제곱미터
<p>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보전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생 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u>동호가목 및 마목</u>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 12. (생 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14. · 15. (생 략) 	<p>제47조(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8. (현행과 같음) 9. ----- ----- <u>마목</u> ----- ----- -- 10. ~ 12. (현행과 같음) 13. ----- <u>묘지관련시설 중 다목</u> 14. · 15. (현행과 같음)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 11. (생 략)
-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13. (생 략)
-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15. · 16. (생 략)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삭 제
- 2. (생 략)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단서 신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제48조(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1. ~ 11. (현행과 같음)
- <삭 제>

- 13. (현행과 같음)
- <삭 제>

- 15. · 16. (현행과 같음)

제49조(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2. (현행과 같음)
- 3. -----
----- .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

가.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
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
시한 지역 밖에 입지하는 것
으로써 부지면적(2 이상의 공
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
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영 별표 20 제1호자목(1)부
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5. (생 략)

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농림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
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 제1호
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으로 시 관할구역으
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
스콘 공장

5. (현행과 같음)

제50조(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영 별표 2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생략)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22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22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75조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생략)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제79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 60퍼센트 -----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3] 권한위임 사무(제102조제1항 관련)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위임사무명	근거 법규
2.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 바. (생략) <u><신 설></u>	법 제56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70조 및 조례 제19조 부터 제30조 까지	2.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u>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u>	법 제56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5조의2 부터 제75조 의4까지 및 조례 제19조 부터 제30조 까지

관계법령

[안 제24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 ④ 생략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 가 기 준
가. ~ 다. 생략 라. 토지분할	(1) <u>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u>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제3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 대구광역시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② 생략

[안 제47조 ~ 제50조의2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 16. 생략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18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 ~ 타. 생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카. 생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 생략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 (6) 생략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 차. 생략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파. ~ 너. 생략

별표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바.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아. 생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 파. 생략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생략

별표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략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생략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 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바. ~ 사. 생략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별표 20 제1호다목·라목 및 사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이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의 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안 제79조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별표 3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참고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도시·군계획조례의 제정·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제한, 토지분할면적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이 없어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민 병 룡